

서울시, 지하철·버스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



▲ 서울시는 최근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심야 연장운행을 재개한다. 사진=shutterstock

서울시가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을 2년 만에 재개한다. 강남과 홍대입구 등 주요 지역을 지나는 시내버스 막차 시간도 9일부터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최근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로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심화하자 수송력을 모두 동원하는 것이다.

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대중교통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을 재개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을 하지 않는다.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은 종착역 기준으로 자정까지 인 운행시간을 오전 1시로 늘리는 것이다. 심야연장운행 재개는 2020년 4월 잠정 중단 이후 2년 만이다.

시내버스도 한시적으로 막차시간을 늦춘다. 강남, 홍대입구, 여의도, 종로2가, 신촌, 역삼, 건대입구, 영등포, 서울역, 명동, 구로역 등 서울시내 주요 11개 거점지역을 지나는 88개 노선에 한해서다. 해당 노선의 경우 11개 주요 지점을 통과하는 막차 시간을 오전 1시로 연장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버스 심야연장운행을 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최근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벌어지자 을빼미버스 노선 확대, 택시부제 해제, 심야 전용 택시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실은 "심야 택시 승차난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이하 임대차 신고제)가 이 달 말 계도기간이 마무리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로도 불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 간 계도 기간을 뒀다. 이달 31일 계도 기간이 끝난다.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고 대상 계약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다. 다만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이다. 가령 2020년 맺은 전세 계약은 지난해 신고제 시행 당시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2022년 6월 1일부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오르거나 내렸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이때 보증금이나 월차임 금액에



▲ 서울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shutterstock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맺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세종·제주도·각 도의 시 지역 주택이 대상이다.

세입자가 전입 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된 것으로 처리된다.

양육비 지급 한 달만 미뤄도 '철창'



▲ 사진/편집=shutterstock/타운뉴스

법원 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유치장 등에 가둘 수 있는 요건이 현행 3개월 미지급에서 앞으로는 1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4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감치는 법원 명령을 어길 경우 유치장이나 교도소 등에 통상 30일 이내로 가둬 두는 조치를 뜻한다. 현재는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고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30일 이내'로 줄였다. 법무부는 감치 기준을 완화하면 양육비 지급 명령의 실효성을 일정 수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양육비 이행률은 3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또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현재는 미성년자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청구해야 하지만 적절한 대상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30년 이상 그대로 이어져 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